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현행 10m로 개설되어 있으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하면 300세대미만 주택단지진출입로는 폭 6m이상만 확보하면 된다는 법규에 의거 동부고속화도로로부터 진입할 수 있는 도로(폭6m)를 노원구청 위('96.7.15)·수탁('96.7.15 계약체결)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재 전체공정중 6.5%를 진행중에 있으며, 2단지는 동부고속화도로로부터 진출입이 가능한 폭 12m도로가 기존에 개설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비록 부곡아파트 재건축과정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사료되지만 만약 고층아파트가 건축될 경우 입주인과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우려가 많고,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소음피해가 심각하며, 지역여건의 열악성으로 인해 분양가능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설계되어 현재(공정률 1.7%) 공사진행중인 점, 공원변경에 따른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없음.
- 7. 소위원회 심사내용 : 소위원회 구성없음.
- 8. 심사결과 :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의 건 서

○청원명 : 부곡아파트재건축사업전면중단과공원조성및인접도로확장을위한청원

○안전별 심사결과

의안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심사결과
425	'99.10.11	'99.10.12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458	'99.11.13	'99.11.16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459	'99.11.13	'99.11.16	제17회 정기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99.12.17)	원안동의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장

본 청원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96번지 일원의 상계부곡연립주택 부지에 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부곡아파트에 대해 고층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먼저 건축된 두산주공아파트 사이에 끼어 일조와 통풍이 제대로 안 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것이 예상되고, 동부간선도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공해가 심해서 일반분양이 안 될 것이니 재건축사업을 중단하고 진출입도로 도로폭을 10m이상 확장하며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청원으로, 상계부곡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설계하여 일부 공사가 진행중이므로 건축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나, 만약 부곡재건축아파트가 15층의 고층으로 건축될 경우 입주인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질 우려가 있고, 동부간선도로에 인접하여 소음피해가 심각하며, 지역여건의 취약성으로 인해 분양가능성도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의 취지는 주변여건과 환경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에서는 동 청원 내용과 같이 조치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199. 12.

도시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의결(처리)건수 : 7건(원안동의 6건, 수정동의 1건)